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 정경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940호)

2024.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2
※ 참고자료	8
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8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개요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경희 · 이인선 · 김성원 · 정우택 · 태영호
조명희 · 이채익 · 이현승 · 박성민 · 권명호
조수진 의원(11인)

나. 발 의 일 : 2023. 12. 15.

다. 회 부 일 : 2023.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립 지원(안 제18조)

개정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청소년</u>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신 설>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청소년(이하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한다)</u>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② <u>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18조¹⁾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및 그 밖에 국내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하 “이주배경청소년”이라 함)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참조】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살펴 보면, 북한이탈청소년 705명, 중도입국청소년 3,846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299,440명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은 외국인주민의 자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이주배경청소년 현황(2022년 말 기준) >

합 계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주민 자녀
303,9991명	705명	3,846명	299,440명

*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및 귀화한 청소년 통계(법무부)

* 외국인주민 자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2022. 11월 기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행안부(2023. 11.))

자료 : 여성가족부

개정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대하여는 이들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져 복지정책의 사각 지대에서 방치될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현행법 제2조제4호2)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14조³⁾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조⁴⁾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 및 생활지원, 학업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의 특별지원 정책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참고자료 2 참조】

개정안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보호·자립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이미 포함될 여지가 높아 보임.

따라서 현행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법무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이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1]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

□ 개요

- (목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통합적·단계적 서비스 지원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24년 예산) 396,600만원
- (경과) '06년 이주배경청소년대상 사업 실시
 -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지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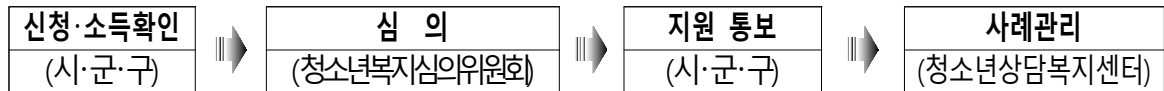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목적) 입국초기 한국사회 적응,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일반청소년 다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인식 제고 사업 추진
 - (사업비) 316,800만원
 - (지원사업) ①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등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보급
 - ②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통역지원사 운영 및 심리사회적응검사 보급
 - ③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 ④ 유관기관 실무자·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김포시, 전주시 등 5개)
 - (목적) 외국인 주민 수 1만 명 이상 지역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위한 지역자원 연계체계 마련,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사업비) 79,800만원
 - (지원사업) 민·관·학 협의체 운영, 맞춤형 서비스(한국어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참고자료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개요

□ 추진 개요

-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체계)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1년이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 청소년 특별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월 15만원(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